

개인보증규정 등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규정」, 「주택금융신용보증 사고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이행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시

□ 전세사기피해자의 원활한 보증 이용을 위한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 내규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도착 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김수철 차장(145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32
- 팩스번호 : 0505-036-0293

붙임 1. 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2. 주택금융신용보증 사고관리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개인보증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u><신 설></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현행과 같음) <u>17. “전세사기피해자”란</u> <u>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u> <u>임차인으로서 사장이 정하는</u> <u>바에 따른다.</u>
제16조(보증제한 대상) ①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8호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증할 수 <u>있다.</u> 1. ~ 10. (생 략) ② (생 략)	제16조(보증제한 대상) ①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8호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증할 수 <u>있으며,</u> <u>전세사기피해자에 한하여 특정 보증과목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부 칙 (40)</u> <u>이 규정은 2023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주택금융신용보증 사고관리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고처리) ① (생 략) ② 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③ (생 략)	제8조(사고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다만,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사고처리된 경우 사고사유와 무관하게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부 칙 (5)</u> <u>이 규정은 2023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u>